

# 2011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06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2011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세입결산액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C)	C/A (%)	차인잔액 (D)=(B)-(C)	D/A (%)
계	298,843,960,000	319,185,621,958	323,744,781,829	101	270,276,639,325	85	53,468,142,504	17
일반회계	229,772,895,000	244,176,536,678	247,903,044,539	102	215,257,163,125	88	32,645,881,414	13
특별회계	69,071,065,000	75,009,085,280	75,841,737,290	101	55,019,476,200	73	20,822,261,090	28

### 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납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=(B)-(C)	D/A (%)
계	298,843,960,000	319,185,621,958	332,620,281,338	104	323,744,781,829	101	8,875,499,509	3
일반회계	229,772,895,000	244,176,536,678	255,571,109,698	104	247,903,044,539	102	7,668,065,159	3
특별회계	69,071,065,000	75,009,085,280	77,049,171,640	102	75,841,737,290	101	1,207,434,350	2

### 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지출액 (B)	이월액		집행잔액 (D)		
				B/A (%)	C/A (%)			
계	298,843,960,000	319,185,621,958	270,276,639,325	85	36,562,545,108 (556,114,663)	11	12,346,437,525	4
일반회계	229,772,895,000	244,176,536,678	215,257,163,125	88	21,105,754,798	9	7,813,618,755	3
특별회계	69,071,065,000	75,009,085,280	55,019,476,200	73	15,456,790,310 (556,114,663)	21	4,532,818,770	6

※ 이월액은 ( )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.

### 라.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차인잔액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계	53,468,142,504 (556,114,663)	22,757,584,927 (556,114,663)	1,111,163,320	12,137,682,198	1,593,051,390	15,868,660,669
일반회계	32,645,881,414	16,977,854,930	1,001,923,320	3,125,976,548	963,797,210	10,576,329,406
특별회계	20,822,261,090 (556,114,663)	5,779,729,997 (556,114,663)	109,240,000	9,011,705,650	629,254,180	5,292,331,263

※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( )로 별도 표시

※ 순세계잉여금=차인잔액(세입결산액-세출결산액)-명시이월-사고이월-계속비이월-보조금집행잔액

### 마. 회계별재무제표 총괄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재정상태보고서			재정운영보고서		
	자 산	부 채	순자산	비 용	수 익	운영차액
일반회계(A)	2,035,956,349,459	47,283,817,798	1,988,672,531,661	164,144,835,613	225,681,266,665	61,536,431,052
공기업특별회계(B)	124,512,476,821	160,688,290	124,351,788,531	7,069,379,609	4,744,121,430	(2,325,258,179)
기타특별회계(C)	222,180,479,261	1,867,250,744	220,313,228,517	11,078,332,056	30,948,321,018	19,869,988,962
기 금(D)	13,426,985,033	5,578,622,491	7,848,362,542	397,736,972	1,517,169,246	1,119,432,274
내부거래(E)	(57,309,468,281)	(10,580,205,281)	(46,729,263,000)	(6,397,072,080)	(6,397,072,080)	0
합 계 (A+B+C+D+E)	2,338,766,822,293	44,310,174,042	2,294,456,648,251	176,293,212,170	256,493,806,279	80,200,594,109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

나. 기타사항

-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 붙임
-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지방자치법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59조 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